

공지사항

『국산개발품 정부구매 안내』

1. 현황

조달청은 국산개발품에 대하여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 4항 7호 및 기술개발촉진법 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과기처장관으로부터 신규 개발품으로 확인받은 국산제품에 대하여 향후 2년간 수의계약방법으로 우선 구매하여 기술 개발업체를 보호하고 있으며 각 수요기관의 의산구매요청이 있을 경우 종합상담실에 구매 예정규격을 10일간 공개, 국내업체로부터 국산개발품구매 전환요청이 있을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내자로 구매전환하고 있습니다.

2. 협조요망사항

조달청은 국산개발품 우선구매 시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산개발품에 대한 정보수집 및 관리체계를 강화코자 하오니 수입에 의존하던 물품을 신규개발하였을 경우 개발업체나 관련단체는 동 사실을 조달청 또는 전자공업진흥회에 통보하여 법령상의 국산 품 우선구매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 사항』

- 품명, 규격 및 사양
- 개발업체명
- 제품설명서
- 관련기관의 품질시험 및 인증 관련문서 사본
- 기타관련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여 문의 바랍니다.

구분	담당과	취급품목	전화번호
전자공업 진흥회	부품 1과	전자부품 및 소재	553-0941 (구내 39)
	정보산업과	컴퓨터 및 주변기기	553-0941 (구내 36)
	산업전자과	산업용전자기기, 통신기기	553-0941 (구내 41)
	가전산업과	가전제품, 전자응용기기	553-0941 (구내 52)
조달청	행정관리담당관		553-9656 553-9322

CFC 대체물질 사용규제에 따른 안내

1. 조치배경

- 우리나라가 금년 5월 27일자로 오존충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가입국이 되었음('92. 6월 현재 80개국 가입)
 - 동 의정서가입국은 가입한 날로부터 3개 월이내에 오존충파괴물질(규제물질)의 '86년도 생산량, 수입량 및 수출량에 관한 통계자료를 UNEP 사무국에 제출해야 함(의정서 제7조)
 - 또한 가입국은 규제물질의 생산 및 사용량 규제조항(3개 규정)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행해야 하므로 통계자료 제출과 함께 우리나라에 적용될 조항을 선택해야 함
- 가입국은 규제물질의 연간 사용량이 '94년 말까지 '86년 사용실적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보증하고 '95년에는 '86년 사용실적의 50%를, '97년에는 15%를, 2000년에는 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보증토록 규정하고 있음(의정서 2조)
- 다만, 개발도상국으로서 규제물질의 연간 사용량이 1인당 0.3kg 미만인 가입국은 제2

공지사항

조에 정한 규제조치의 이행을 10년간 연기 시킬수 있음(의정서 제5조1항)

- 우리나라는 제1차 의정서가입국회의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었고, '86년의 사용실적이 국민 1인당 0.28kg이므로 의정서 5조1항의 적용이 가능함.
- 규제물질의 사용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의정서 가입초기에는 연간사용량이 1인당 0.3kg을 초과하여 개도국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94년까지 사용 한도량이 가장 많은 선진국특례조항(의정서 2조 6항) 적용을 적극 검토하여 왔음(의정서 2조6항 : 1인당 0.5kg까지 사용가능)
- 그런데 최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의정서가입국실무회의('92. 4월, 7월)에서 특정물질의 규제일정을 대폭 단축한 의정서 조정안이 제안되었으며,
 - 이 조정안은 미국, EC 등 거의 모든 선진국과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별 이견이 없으므로 11월 가입국회의에서 채택될 것이 확실시 되는 등 제반여건이 달라짐에 따라 규제조항별 실익을 종합검토하여 우리나라에 적용될 규제조항을 최종 선택해야 할 시점에 있음

〈특정물질규제일정〉

현 행	조 정(안)
'95년부터 50% 감축	'94년부터 70~80% 감축
'97년부터 85% 감축	'96년부터 100% 감축
2000년부터 100% 감축	

※ 다만, 개도국은 감축개시일로부터 10년간 (2003년) 감축을 유보받아서 1인당 0.3kg까지 사용가능

2. 규제조항별 실익검토

가. 의정서규제조항별 우리나라 사용한도량

(조정안기준)

		(kg/인)			
		'93	'94	'95	'96
선진국	일반조항 (2조1-4항)	0.28	0.06	0.06	0
	특례조항 (2조 5항)	0.5	0.1	0.1	0
개도국조항(5조1항)		0.3	0.3	0.3	0.3

나. 규제조항별실익검토

- 선진국 일반조항(의정서 제2조)은 장단기적으로 가장 불리하므로 검토대상에서 제외함
- 선진국특례조항(의정서 제2조 제6항)은 현행 의정서를 기준으로 할 때는 '94년까지 사용한도량이 가장 많으나 조정안을 기준할 때에는 '93년 한해를 제외하고는 개도국조항보다 불리함
 - 또한 선진국으로 분류되므로 대개도국 지원을 위한 기금의 부담의무가 발생함.
(기준부담금 : '92. '93년 : 각 4.6억원/년, '94년 10억원/년)
- 한편, 개도국조항(의정서제5조제1항)은 의정서조정안을 기준으로 할 때 사용량 면에서 '93년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 가장 유리하고 기금부담이 면제되며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93년중에 사용량을 0.3kg/인 이하로 감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의정서가입국실무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제일정의 조정안이 채택될 것이 확실시 되므로 개도국조항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판단됨

3. 조치계획

- 특정물질의 '86년도 생산량, 수입량 및

공지사항

수출량에 관한 통계자료를 UNEP 사무국에 제출하여 개도국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

- 현재까지 검토해 온 선진국 특례조항 적용자료는 제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안내

1. 입법 추진배경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의 개발은 막대한 자본과 시간 및 고도의 기술이 소요되는 반면 무단복제 등의 형태로 침해받을 위험성이 큼에 따라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를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배치설계의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여 반도체 관련산업의 발전과 기술향상을 도모

2. 법안의 주요골자

가. 배치설계의 이용을 배치설계에 의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를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을 양도, 대여하거나, 전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등으로 하여 배치설계권자의 권리보호범위를 최종제품에까지 확대함

나. 배치설계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으로 함

다. 배치설계권의 효력은 타인의 등록된 배치설계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등을 선의이며 과실없이 인도받은 자가 그 반도체집적회로 등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양도, 대여, 전시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못하게 함으로써 반도체집적회로 등의 유통을 원활히 하였음

라. 상공부장관은 배치설계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이상 국내에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이용이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이용권의 설정을 강제로 재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남용의 방지 및 자유경쟁을 촉진함

마. 반도체를 사용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그 반도체를 사용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액을 초과할 수 없음

3. 국내전자업계에 미치는 영향

○ 법 초안은 배치설계 권리자의 권리가 반도체를 부품으로 사용하여 제조한 최종제품(예 : Computer, TV)의 거래행위에도 미치도록 되어 있음으로 해서, 반도체업계 뿐만 아니라 최종제품제조업계 전체가 법적용대상에 포함되게 하나, 다음과 같은 보완규정을 마련함으로서 최종제품의 생산 및 거래를 제한하는 요인을 최소화하였음

1) 손해배상한액

○ 반도체가 불법제조되었음을 알고서 이를 구입한 자는 그 불법반도체의 사용에 따른 권리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그 손해배상액은 불법제조된 반도체를 사용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액(정상적인 반도체 가격과 불법반도체 가격과의 차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즉 Royalty 산정은 반도체가격을 기초로 책정되어야지 최종제품 가격을 기초로 한 Royalty 산정방식은 인정하지 않음

*** 공지사항 ***

2) 선의의 구매자보호

○ 권리자의 권리가 반도체가 불법제조되었음을 모르고 이를 구입한 자(선의자)가 그 반도체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그 제품을 거래하는 행위에는 미칠 수 없음

— 다만 선의자가 자신이 구입한 반도체가 불법제조된 것임을 알고난 이후에는,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에 대하여만 적정 수준의 Royalty 지급의무만이 발생하며, 이미 선의로 구입한 반도체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거래행위는 전혀 제한을 받지 아니함

— 또한 그로얄티는 정상적으로 반도체를 구입하였을 때 가격과 불법반도체 구입 가격과의 차액을 초과할 수 없음

4. 입법에 따른 업계 유의사항

- 반도체를 구입시 그 반도체가 적법하게 제조되었음을 사전에 확인토록 함
- 그 반도체의 배치설계가 등록되어 있을 경우 그 등록증의 사본정구 등
- 또한 사후 그 반도체가 불법제조된 것임이 밝혀질 경우를 대비하여 구매계약시 손해배상책임규정을 반드시 삽입토록 함

KOTRA 해외시장정보 이용안내

1. 회원제 운영

KORTA 80여개 해외무역관을 통해서 해외 수출입상명단, 상품수요·생산·경제동향, 상품개발동향, 수입규제, 거래알선정보 등 각종 경제무역정보를 수집하여 신속·정확하게 전파하고 해외 세일즈 활동, 전시회참가, 해외홍보 등 국내업계의 해외 마케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운영하는 제도.

○ 회원가입자격

— 수출입 및 국제경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국내업체, 단체, 개인 등 누구나 가능.

○ 회원유형별 서비스내용 및 연간회비

회원구분	서비스 내용	연간회비
기본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간 "코트라 해외시장"지 무료배포• 해외 수출업자가 명단 및 국별기초 정보 무료제공• 공사 간행물 판매가 할인(30%)• 공사 간행물 광고제재료 할인(20%)• 수탁조사 수수료 할인(20%)• 카타로그 제작을 위한 상품촬영 및 디자인 지원(설비)• 카타로그 해외 무료 배포• 자료복사 수수료 할인(30%)	9만원
선택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입찰·플랜트 수출정보 제공• 해외투자·구상무역정보 제공	전품목: 8만원 전문품목: 3만원
선택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이어소개 및 상담지원• 해외출장자 상담활동 지원• 수출입 인콰이어리 제공	10만원
선택 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방 통상정보지 무료 배포• 북방지역 무역정보 등 관련자료 제공	10만원

○ 회원가입 방법

— 서울지역은 정보상담부, 지방은 국내무역관
— 금융기관 지로창구(지로번호 : 752-2701) 이용

○ 문의처 : 정보상담부 회원과(전화 : 551-4276, 4279, 4429) 국내 9개 무역관

2. 유료수탁 조사

- 해외시장조사
- 해외업체 신용조사

3. 무역정보 상담(무료)

- 일반무역상담
- 분야별 전문상담
 - KOTRA 직원들의 다양한 해외근무 경

공지사항

협과 전문지식을 무역업계가 상시 활용
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 상담요원을
지정, 대업계 상담서비스

왕대준공업단지 입주업체 모집안내

1. 위치

충남 논산군 두마면 왕대리 258번지

2. 분양 예정 지역

용도별	면적(평)	블록수	필지수	비 고
계	52,828	6	52	필지당 1,000평 기준
공장용지	37,773	4	37	으로 신청면적에
지원시설용지	15,055	2	15	따라 조정 가능

3. 입주 대상업체

1. 대상 업종

- 공장용지 : 기계, 전자, 자동차산업, 섬유, 식료품, 기타 제조업
- ※ 단, 다음 업종은 제외함 : 염색가공, 피혁, 도료, 주물, 안료, 염료, 시멘트 가공(레미콘 포함), 농약, 타이어 및 고무제조, 석유화학제조업
- 지원시설용지 :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교육연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자동차 폐차시설 제외), 전시시설

2. 대상 업체

- ① 계룡신도시 개발지구에 편입되어 이전이 시급한 업체와 관내 공장등록이 된 업체 중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
- ② 모집공고 또는 상공회의소 등 관련기관에 추천의뢰하여 출장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업체
- ③ 기타 소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단, 신청일 현재 공장소재지 시·군·구에 등록된 공장에 한함)

3. 심사방법 및 결정

- ① 별도 배점기준에 의거 채점 후 조정위원

4. 국내 최고의 무역자료실(무료)

- 자료열람 서비스
- 전자매체자료 서비스
- 무역정보자료 FAX 서비스
- 국내 무역통계 전화상담 서비스
- 신착자료 자동통보 서비스

5. 간행물 판매

80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수집한 경제, 무역 정보를 정리, 분석하여 책자로 발간 판매.

- 발간종류 : 연 80여종
- 발간부수 : 1종당 400부 내외, 연 30,000여 부
- 현 판매간행물 종류 : 150여종
- 문의 및 판매처
 - 정보상담부 회원과(전화 : 551-4430/1)

*** 공지사항 ***

- 회에서 종합 검토 결정
- ② 면적사항은 상공부 부지 원단위 품목별 기준공장 면적(상공부 고시 제87-14호 87.5.26)을 적용한 자료를 기준으로 기준 공장 면적과 신청면적을 감안하여 시정
※ 심사항목 : 지역경제 기여도, 재정상태, 중소기업육성시책, 기술개발, 도시계획 상 저촉, 기타

4. 입주 신청

1. 접수장소 :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도시과 공단조성계

※ 신청서 및 안내서 배부 : 접수 장소

2. 결정통보 : 심사후 개별통지 및 출장소 게시판 공고

3. 신청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당 출장소 소장양식)

-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무제표확인(증명)원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 관할 세무서장 발행

- 신청전월분 근로소득세 징수액 집계 확인원 1부

- 기존 공장등록증명원 1부 - 시장, 군수, 구청장 발행

- 기타 제출서류(해당업체에 한함)

① 유망중소기업, 중견수출지정업체, 근대화산업승인업체, 계열화승인업체 중 1개 항목 해당하는 서류사본 1부

② 최근 2년간 기술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및 세액공제 확인서 - 관할 세무서장 발행

③ 용지지역 위반업체의 경우 도시계획 확인원 1부

④ 용도지역 위반업체 중 자가공장의 경우 기존공장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1부(미첨부시 임대공장으로 인정)

5. 문의처 : (0461) 33-2893/6

제7회 한국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시회 안내

1. 목적

-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의 활성화
- 국내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촉진과 판로진작
- 국외 컴퓨터 소프트웨어 소개와 국내업체의 기술개발 경쟁력 제고
- 출품업체 상호간의 정보교환에 의한 기술개발력 향상
- 컴퓨터 소프트웨어 마인드 확산으로 첨단 기술 개발 분위기 조성

2. 기간

- 1993년 6월 24일~28일(5일간)

3. 장소

- 한국종합전시장(KOEX) 3층 대서양관 5, 6, 7실

4. 추진기구

- 주관 : 체신부

- 주최 : 전자신문사

한국정보처리전문가협회

- 후원 : 한국통신,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전자공업진흥회, 한국정보문화센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시스템공학연구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데이콤, 서울방송

전자사항

5. 예상전시품목

- 컴퓨터 하드웨어 및 주변기기 : 2,000여점 ('92년도 2,000여점)
- 소프트웨어 : 4,000여점 ('92년도 3,000여점)
- 관련기술도서 : 700여점 ('92년도 600여점)
- 소 모 품 : 500여점 ('92년도 500여점)
- 기타비품 및 악세사리 : 100여점 ('92년도 70여점)

6. 추진일정

추진내역	일정
신청 접수	1992. 10. 15~1993. 3. 30.
장치 공사	1993. 6. 20~1993. 6. 22.
전시품 반입	1993. 6. 23
개막식	1993. 6. 24(오전 10:00)
전시품 반출	1993. 6. 29~1993. 6. 30.
철거 완료	1993. 6. 30(18:00까지)

7. 문의처 : 784-3091

1993년 전자산업전망 세미나 개최 안내

1. 목적

최근의 전산업동향 분석 및 '93년도의 경기 전망을 업계 및 관계기관의 전문가와 함께 집중조명하여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업계의 대응방안을 모색코자 함.

2. 참석대상

전자업계 대표 및 경영기획 담당임직원, 관계기관 인사 등 300여명

3. 개최일시

'92. 12. 4(금) 08:00~11:00

4. 장소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3층(다이아몬드볼룸)

5. 세미나 내용

순서	발표 내용	발표자	비고
개회사	전자산업동향보고 부문별주제 발표	본회진행이사 이상현부부장 '93년 세계전자시장전망 '93년 가전산업 전망 '93년 컴퓨터산업전망 '93년 통신산업전망 '93년 반도체산업전망 '93년 부품산업전망I '93년 부품산업전망II	본회 10분 20분 " " " "
질의 및 응답		발표자및참석자	

6. 주최 : 본회, 전자신문사 공동 개최

러시아의 대한 합작희망기업 안내

주한 러시아 대사관으로부터 대한 합작희망 기업에 관한 희망을 해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러시아 비지니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 합작희망기업 : 1) RD & P Center "ORION"
2) "VIMPEL" Corporation
2. 합작희망분야
1) RD&P Center
"ORION"

공지사항

- photodetector optoelectronic systems
 - mutual production of freonless equipment using thermoelectronic cooler (TEC)
 - mutual production of night vision devices
 - various goods for commercial markets manufacturing from glass, crystal, ceramics, leather and polymer materials and electron and ion-beam equipment for production of these goods
- 2) "VIMPEL" Corporation
- water purification technology
 - "ALAR" – environment state operative remote control
 - "ARGA" – short over an hour forecast of thunderous activity in the range of 15~20km
 - radiation technological installation for polyethylene pipes and films modification and industrial accelerator
 - irradiated polyethylene hose and hoses-based pipelines
 - new method of getting of stainless steel powder
3. 문의처 : TEL : 723-3581/3, FAX : 723-3584

'러시아 민영화' 국제세미나 안내

1. 회의명 : 'Privatization in Russia' International Seminar
2. 기 간 : 1993. 1. 18~1993. 1. 22(5일간)
3. 장 소 : Podmoskovoye Hotel(모스크바 근교 소재)
4. 주 관 : Russian Conversion Ltd.(후원 :

UNIDO, 러시아 국유재산기금)

5. 주요주제
 - 러시아 외국인 투자법
 - 러시아 산업의 민영화
 - 러시아의 산업 재전환 및 투자정책
 - 러시아 금융제도
 - 민영화하에서의 증권거래
 - 투자상담
 - 러시아 기업의 재산 및 주식 경매 등
6. 통 역 : 러시아어, 영어 동시통역(단, 투자 상담시에는 개인통역 가능)
7. 프로그램 : 생략
8. 참가비 : • '92. 12. 15. 이전 신청시 : U\$ 1,480
• '92. 12. 15. 이후 신청시 : U\$ 1,860
9. 연락처 : Russian Conversion Ltd.
Russian 127018 Moscow, box 47
Tel : 007-095-241-24-20, Fax : 007-095-227-36-08

'92~'93년도 신규개발기계설비 구입을 위한 외화표시 원화대출대상자 선정요령

상공부 고시 제1992-40호

'92~'93년도 신규개발기계설비 구입을 위한 외화표시 원화대출대상자 선정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 융자 대상품목 선정절차
 - 가. 국산기계설비 개발업체는 개발품목의 양산개시후 한국기계공업진흥회 등 신청접수기관에 개발품목을 신고한다.
 - 나. 신청접수기관은 신고된 품목의 개발내용 및 판매(양산)실태를 점검한다.
 - 1) 신청접수기관은 필요한 경우 현장

공지사항

실사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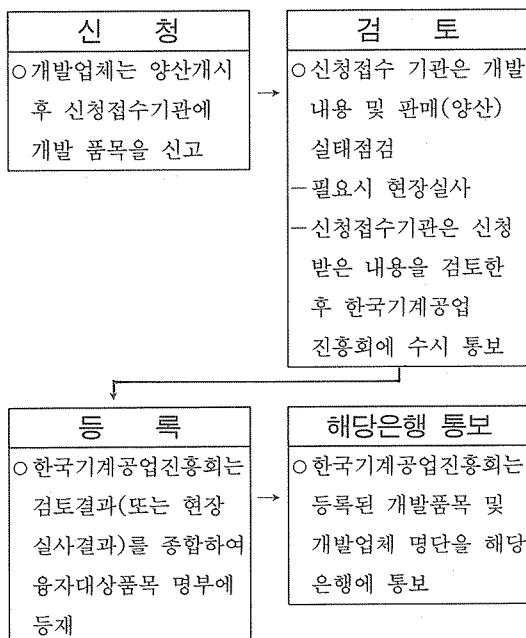
- 2) 한국기계공업진흥회 이외의 신청접수기관은 신청받은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한국기계공업진흥회에 수시로 통보한다.

다. 한국기계진흥공업회는 검토결과(또는 현장실사 결과)를 종합하여 개발완료된 품목을 융자대상품목 명부에 등재한다.

라. 한국기계진흥공업회는 등록된 개발품목 및 개발업체의 명단을 해당은행에 통보한다.

○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융자대상품목 선정 절차



2. 등록기관 및 신청접수기관

가. 등록기관 : 한국기계공업진흥회

나. 신청접수기관

- 1) 한국기계공업진흥회 : 전품목

- 2) 한국공작기계공업진흥회 : 공작기계류 및 로보트
- 3) 한국섬유기계협회 : 섬유기계
- 4) 한국재봉기공업협회 : 재봉기
- 5)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 : 냉동공조기계
- 6) 한국반도체산업협회 : 반도체장비
- 7) 한국전자공업진흥회 : 통신기계류, 계측기기류
- 8) 한국전기공업진흥회 : 전기기계류
- 9) 한국정보처리산업진흥회 : 정보처리시스템(소프트웨어 포함)

3. 등록대상품목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91년 1월 이후 판매개시한 기계설비를 등록대상으로 한다.
 - 가. 기계류, 부품, 소재 국산화사업에 의해 개발된 기계설비
 - 나. 정부의 정책사업(공업발전기금,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특정 연구개발사업 등)에 의해 개발된 기계설비
 - 다. 특허법 제87조 및 실용신안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되어 신규로 개발된 기계설비
 - 라. 정부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기계설비
 - 마. 기술도입에 의해 개발된 기계설비
 - 바. 주문제작에 의하여 새로인 설계된 품목으로서 신청접수기관이 확인한 기계설비
 - 사. 기타 신규개발기계류 심의위원회가 신규개발품으로 인정한 기계설비

4. 우선융자대상품목

- 가. 기계류, 부품, 소재 국산화사업에 의해 개발된 기계설비
- 나.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개발된 기계설비

공지사항

- 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계설비
- 라.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기계설비

5. 융자대상자

- 한국기계공업진흥회에 등록된 기계설비를 국내생산자로부터 산업용설비 또는 연구용기자재로서 구입하는 자

6. 등록시 유의사항

- 가. 판매개시(또는 양산개시)란 신제품을 개발하여 양산화하거나 시중에 판매하는 시점을 말하며 시제품을 제작, 수요자에게 판매하여 품질시험단계에 있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나. 단순한 모델변경은 신제품개발로 보지 아니하고 주요기능이 변경되거나 성능이 항상(생산성향상, 에너지절감 등)된 경우는 신제품개발로 본다.
- 다. 주문시마다 설계를 새로이하여 개발, 제작된 플랜트성격의 기계장치류는 신규개발 기계류 심의위원회가 신규개발 품 여부를 결정한다.
- 라. 외국 선발업체의 덤피ング 등으로 산업피해가 있거나 우려되는 설비, 기타 상공부장관이 특별히 수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91년 1월 이전 판매개시한 설비라도 융자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다.

7. 융자대상품목 통보

- 가. 한국기계공업진흥회 회장은 등록된 개발품목 및 업체 명단을 매월 해당은행에 통보한다.
- 나. 융자대상품목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업계의 편의를 위하여 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 확인서를 우선 발급하고 차후에 융자대상품목 명부에 추가한다.

- 다. 해당은행은 융자대상품목명부 또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 발행한 확인서에 의해서 융자대상으로 취급한다.

8. 등록신청 구비서류

- 신규개발기계설비 등록신청은 생산업체가 하되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가. 신규개발 기계설비 생산신고서(소정양식) 2부
 - 나. 신고품목 용도설명서 및 카타로그 2부
 - 다. 국산개발 확인서류(시제품납품서, 주문서 등) 1부
 - 라. 기타 확인에 필요한 서류

9. 신규개발기계류 심의위원회

- 가. 신규개발기계류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기계공업진흥회에 “신규개발기계류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 나. 상공부 품목담당관은 소관품목의 심의를 위하여 신규개발기계류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 다. 등록신청인 또는 신청접수기관은 신규개발기계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0. 등록기관의 보고사항

- 등록기관은 개발업체명, 개발품목명, 개발품의 규격 또는 모델명, 개발년월일, 업체구분(중소기업, 대기업), 정책자금 지원여부 등을 수시로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문의처 : 본회 무역과(Tel : 554-6739)